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3
----------	-----

2023. 10. 1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구청장(어르신복지과)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13.)
“ 심사중지 ”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의 용도, 관리·운용
조항 일부개정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 및 기금출납원의 명칭 현행화 필요

3. 주요내용

가. 제3조(용도) 8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조항 신설

나. 제3조의2(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개정

다. 제4조(관리·운용) 지원금을 '적립금 및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로 개정

라. 제5조(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어르신지원팀장' 으로 개정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1. ~ 2023. 9. 21.) 결과, 특기 사항 없음.

※ 남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 사항 있을 시 별도 첨부 예정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1)에 근거하여 강남구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조례에서 정한 노인복지증진 사업 또는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금번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바, 이를 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제출되었음.

2 조례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주요 개정 내용

개정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맞는 사업에 지원한다. 〈신설〉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맞는 사업에 지원한다. <u>8.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된 노인 여가복지시설 건립</u>

-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조항	개정 전	개정 후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u> 로 한다
제4조 ② (기금의 관리·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은 <u>적립금의 운용수입금</u> 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 에서 한다.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u>적립금 및 운용수입금</u> 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 에서 한다
제5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u>노인지원팀장</u> 이 된 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u>어르신지원팀장</u> 이 된다
제8조 (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은 <u>노인지원팀장</u> 으로 한다.	기금출납원은 <u>어르신지원팀장</u> 으로 한 다.

- 노인복지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조례 제3조²⁾는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강남구지회 육성 지원을 포함한 8가지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 바, 집행부는 노인 복지법 제36조³⁾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맞는 사업에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강남구지회 육성
2. 노인교육 및 취업 훈련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육성
5.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출하였음.

-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3년 12월에서 28년 12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외에는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음.

3 개정안 검토

가.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운용 내역

-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22년말 기금조성액은 21억7천만원이며 23년도 기금수입 6천6백만원과 기금지출 3천3백만원으로서 23년말 예상 조성액은 22억6백만원으로 확정하였음.
- 기금의 주요 활용처를 보면 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0만원과 ②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 2천3백만원 ③ 어르신역사문화활동지원사업 9백7십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집행부가 예산부서에 제출한 2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90만원)만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고, 종전의 그 밖의 사업들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음.

※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비용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집행부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24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약 22억원에 이르는 노인복지기금의 활용처는 사실상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만 반영되어 있음.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 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기금 존치 필요성

- 최근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바, 대표적으로 경기도 양평군(18.9), 전북진안군(19. 10), 충북음성(22.12), 경기도 안성시(20.10), 서울시 관악구(21.11), 서울시 노원구(23.3), 서울시 양천구(23.7)가 각각 노인복지금 관련 조례를 폐지한 바, 그 폐지 사유를 보면 ‘기금은 ① 이자수입 이외의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낮아 기금을 폐지하고 ②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히고 있음.
- 금번 조례안에 반영된 노인여가복지시설 필요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가능하며,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약 22억)의 기회 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금의 존폐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결론

- 기금이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재정운용의 합리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13.)

- 질 의 : 제안설명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을 노인복지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기금으로 그렇게 사용해도 가능한가
- 답 변 : 적립된 노인복지기금은 20억 정도, 노인시설이 많이 열악함. 노

인시설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건립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하나 예산편성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만큼 긴급히 필요한 경우, 계약금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함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 질 의 : 기존 조례나 본 일부개정안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보면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이 대부분이라 용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답 변 : 열악한 어르신 시설 상황과 급변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기금을 존속하고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기금의 용도에서 일반회계 사업을 삭제하여 기금을 존속하도록 의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7. 토론 요지

- 기금의 용도를 열거한 항목 중,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63호

발의일자 : 2023. 10. 16.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기금의 용도를 열거한 항목 중,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목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기금의 특성에 맞춰 기금이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기금의 용도 규정의 일부를 삭제함(안 제3조제1~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맞는 사업에 지원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 -----.	제3조(기금의 용도) (개정안과 같음)
<u>1.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강남구지회 육성</u>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u>2. 노인교육 및 취업 훈련</u>		<삭 제>
<u>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u>		<삭 제>
<u>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육성</u>		<삭 제>
<u>5.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u>		<삭 제>
<u>6.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u>		<삭 제>
<u>7. 노인문제상담소 운영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u>		<삭 제>
<신 설>	8.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된 <u>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u>	1.(개정안 제8호와 같음)
8.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2.(개정안 제9호와 같음)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 <u>2028년 12월 3</u> <u>1일</u> -----. ----- ----- -----.	(개정안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② 제3조에 따른 <u>지원</u> 은 <u>적립금</u> 의 운 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한다.	② ----- <u>지원금</u> 은 <u>기금</u> <u>적립</u> <u>금</u> 및 ----- -----.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 성) ① ~ ③ (생략)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 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노인지원팀</u> <u>장</u> 이 된다.	④ ----- ----- <u>어르신</u> <u>지원팀장</u> ---.	(개정안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생략)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u>어르신복지과장</u> 으로, 기금출납원은 <u>노인지원팀장</u> 로 한다.	② ----- ----- <u>어르신지원팀장</u> 으로 --.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2호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제3조의2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원은 적립금의”를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 및”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노인지원팀장”을 “어르신지원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노인지원팀장”을 “어르신지원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 동목적에 맞는 사업에 지원한 다.	제3조(기금의 용도) ----- ----- ----- --.
1. <u>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 회 강남구지회 육성</u>	1.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 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2. <u>노인교육 및 취업 훈련</u>	<삭 제>
3. <u>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 양</u>	<삭 제>
4. <u>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육성</u>	<삭 제>
5. <u>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 원</u>	<삭 제>
6. <u>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u>	<삭 제>
7. <u>노인문제상담소 운영</u>	<삭 제>
8. (생 략)	2. (현행 제8호와 같음)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 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② 제3조에 따른 <u>지원</u>은 <u>적립금</u>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노인지원팀장</u>이 된다. ⑤ (생략)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u>어르신복지과</u>장으로, 기금출납원은 <u>노인지원팀장</u>로 한다. ③ (생략)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u>지원금</u>은 <u>기금</u> <u>적립금</u> 및 -----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어르신지원팀장</u>---.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어르신지</u> <u>원팀장</u>으로--. ③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3
----------	-----

제출연월일: 2023. 9. 27.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어르신복지과

1. 제안이유

-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의 용도, 관리·운용 조항 일부개정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 및 기금출납원의 명칭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 가. 제3조(용도) 8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조항 신설
- 나. 제3조의2(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개정
- 다. 제4조(관리·운용) 지원금을 '적립금 및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로 개정
- 라. 제5조(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어르신지원팀장'으로 개정
- 마. 제8조(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을 '어르신지원팀장'으로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
하

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
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1. ~ 2023. 9. 21.) 결과, 특기 사항 없음

※ 남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 사항 있을 시 별도 첨부 예정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제3조의2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원”을 “지원금”으로 “적립금의”를 “기금 적립금 및”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노인지원팀장”을 “어르신지원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노인지원팀장로”를 “어르신지원팀장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 동목적에 맞는 사업에 지원한 다. 1. ~ 7. (생 략) <u><신 설></u> 8. (생 략)	제3조(기금의 용도) ----- ----- ----- --. 1. ~ 7. (현행과 같음) 8.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 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 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 략) ② 제3조에 따른 <u>지원</u> 은 <u>적립금</u> <u>의</u>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 금 범위에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 행과 같음) ② ----- <u>지원</u> 금은 <u>기금</u> <u>적립금</u> 및 -----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노인지원팀장</u>이 된다. ⑤ (생략)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u>어르신복지과</u>장으로, 기금출납원은 <u>노인지원팀장</u>로 한다. ③ (생략)	음) ④ ----- ----- -- <u>어르신지원팀장</u>---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어르신지원팀장</u>으로--. ③ (현행과 같음)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노인여가시설 건립에 따른 조성 기금 사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에 따른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나오지 않고, 현재
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 사용 범위를 규정해 놓음.

4.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사회7급 김래인(02-3423-5912)